

■ 상품 가입 고객 확인서

■ 예금 등 약관과 상품설명서의 수령 및 설명에 대한 이해와 투자 확인

- 본인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수령함 수령거절함]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고객 확인

-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전까지 본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
 - 만기일(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영업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 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 원리금 보장상품(정기예금, GIC)의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법규에 정한 금융기관간 상품교환 한도초과, 자사상품 운용불가 등)에는 하나은행이 정한 타행 정기예금으로 대체하여 자동 (재)예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미동의]
- 은행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신 손님께 만기 도래 15일전까지 LMS(장문문자메세지) 또는 E-Mail을 통하여 만기예고를 안내드리고 있으나 하단의 안내 수신 허용 여부 및 수신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수신허용(E-mail) 안내수신 허용(LMS) 안내수신 거부]

■ 퇴직연금 구축행위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신용등급(CB) 7등급이하 개인)

- 퇴직연금 신규(계약이전 포함)후 1개월이내 여신실행(신규, 대환, 재약정, 기한연장)이 제한되며, 여신실행 1개월이내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 됩니다.
- 기한연장은 기한의 만기전(연장승인일) 퇴직연금 선가입은 구축행위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퇴직연금 신규시(DB, DC 가입자는 제외) 1개월이내 중소기업 여신실행이 제한됩니다.
- 퇴직연금 구축행위외 다른 구축행위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지시에 대한 확인

- 원리금비보장상품(수익증권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수익증권) 매매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시간은 익영업일로顺延되어 적용됩니다. (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 1영업일)
- 퇴직연금 감축규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비중이 총 적립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예금자보호 확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근로자(가입자) 개인부담금 입금 시 유의사항 확인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집합투자증권) + 퇴직연금(DC, IRP))의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계약금액 / 한도/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타행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동의 합니다.
-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여 입금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을 통하여 입금예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사항 확인

- 퇴직연금 계약서(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및 자산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의거 매년 계약당당일(최초 부담금 입금일자) 기준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 : 적립금 차감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별도납부(단,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은 적립금에서 차감)

■ 일시 지급(해지)시 과세 및 유의사항 확인

-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과세, 세액공제 받은 개인(본인)부담금 및 총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과세됩니다.
- 개인형IRP계좌 해지시 납입한 용도(퇴직금 또는 개인부담금)를 구분하여 일부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연금수령 신청과 동시에 1회에 한하여 적립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지급신청과 동시에 자금수령이 불가하며 운용중인 모든 상품(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의 매도가 완료되어야 지급가능합니다. 본인의 운용상품별, 지급신청 시간대별로 실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미발행 신규 신청 및 확인

- 통장 발행 없이 신규 신청하며, 통장미발행 계좌의 해지(제신고)시 별도의 통장없이 예금거래신청서 상에 날인(기재)된 청구서 등에 의해 거래함에 동의합니다. 통장 발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가입자격 확인

- 본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임을 확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2조1항1호 참조)

본인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주요 내용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확인서, 유의사항, 상품가입확인서의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기에 하나은행과 퇴직연금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서명)

